

瑞山市새마을 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

# 審 查 報 告 書

總務委員會

2000. 3. 22

## 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2000. 3. 14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2000. 3. 14

라. 上程日字 : 2000. 3. 22

## 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自 治 行 政 課 長 方 景 泰)

### 가. 提 案 理 由

-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자격 및 지급정지규정중 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교육부 학업 성적관리 제도와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 관리코자함.

### 나. 主 要 骨 子

- 제9조 장학금지급의 정지 중 “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”를 “학습성취도가 ‘미’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 이거나”로 함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자격및지급 정지에관련된 사항중 일부로써,
- 현행 교육부 학업성적관리제도와 조례에서 정한 자격및지급정지기 준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항임.
-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查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143호
의결년월일	2000. 3. . (재 회)

##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0. 3. 14

#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0. 3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## 개정이유

-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자격 및 지급정지 규정중 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교육부 학업 성적관리 제도와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 관리코자함.

## 주요골자

-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 중 “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” 를 “학습 성취도가 ‘미’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자” 로 함 (안 제3조제1항제2호)
- 제9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중 “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” 를 “학습성취도가 ‘미’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 이거나” 로 함 ( 안 제9조제1항제3호)

## 참고사항

- 초.중.고 생활기록부 전산처리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): 별첨
-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
- 입법예고 : 2000. 2. 10 (결과 : 특이한 사항 없음)

##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 성취도가 ‘미’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

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, 학습 성취도가 ‘미’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.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이상 일것을 요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 하는 자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및 2. (생략)</p> <p>3. <u>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때,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 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 할때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 성취도가 '미'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1. 및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, 학습 성취도가 '미'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 현행과 같음)</p>